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 강유정 · 김영진 · 김영배

강선우 · 김한규 · 서영교

장경태・박 정・박희승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표준계약서)"를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 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 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
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u>산)</u> ①
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u>미래창</u>	<u>과학기술정</u>
조과학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	<u>보통신부</u>
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	
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	
다.	
<u><신 설></u>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
	<u>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u>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
	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
	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
	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
	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
	<u>다.</u>
<u>② (생 략)</u>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